

## 4.1.17 시설물사용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12. 03. 16.

개정 2021. 02. 1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용대상) ① 각종 시설물은 본 대학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수업, 실습 및 연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을 허가한다.

② 외부단체의 사용은 매 학기 도중 평일은 불허한다. 다만, 사전결재 후 허가할 수 있다.

제3조(사용범위) 사용할 수 있는 본 대학의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.

① 강의실 및 국제회의장 <개정 2012.3.16.>

② 체육관 및 부대시설

③ 인조잔디구장, 테니스장 및 농구장 등 <개정 2012.3.16.>

제4조(체육시설 운영) 본 대학 체육시설(체육관, 운동장 등)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2.3.16.>

제5조(관리) 본 대학 시설물 사용에 관한 업무는 총무과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2.3.16., 2021.02.16.>

제6조(신청 및 승인) 학생, 교직원,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 대학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의한 행사명, 목적, 행사기간 또는 사용시간 및 참석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1주일 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.

제7조(사용준수사항) 본 대학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사용 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

②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

③ 질서유지

④ 사후 청결 및 정리

⑤ 훼손물의 변상 등

⑥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

제8조(사용제한)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.

① 교육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할 때

② 사용수칙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파괴,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

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

제9조(지역사회개방) 인근지역 주민 건강을 위하여 본 대학 체육시설을 개방할 수 있으며,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3.16.>

제10조(사용료) ① 외부기관 및 단체에서 시설물을 대여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
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가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② 수업 및 본 대학 행사는 제외한다.

③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본 대학 시설관리팀에 사용료 등 관계비용 전액을 시설물대여사용료<서식2>에 근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외부기관 및 단체가 자체적인 임대료 지급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임대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④ 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나 기구에 파손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  
<본조신설 2021.02.16.>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

### 시설물대여사용료

(단위 : 원)

구분	기준	사용시간	평일	공휴일	비 고
인조잔디구장	1면	1시간	40,000	50,000	
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	1면	오전	40,000	60,000	
		오후	40,000	60,000	
체육관	전체	오전	300,000	450,000	
		오후	300,000	450,000	
전산실	1실	오전	100,000	130,000	컴퓨터실 + PC사용료 포함
		오후	100,000	130,000	
대강당	1실	오전	250,000	300,000	
		오후	250,000	300,000	
강의실	1실	1시간	25,000	32,000	

- ※ 1. 위의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임
- 2. 적용시간 : 오전(09:00~13:00), 오후(13:00~17:00)
- 3. 대강당 : 100명 이상의 각종 세미나실 등 대강당을 지칭함
- 4. 시설물대여 사용에 관한 청소비는 대관자와 협의 후 결정함